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57413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한국니케

4. 주식회사 C

5. D

변론 종결 2016. 6. 29.

판결 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617,480원 및 그 중 682,777,93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니케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니케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7. 30. 접수 제91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5. 15.접수

제573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바.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573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4.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거래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한도 700,000,000원,보증기한 2014. 5. 21.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수출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5. 21. 피고 A에게 변제기 2015. 5. 20.로 정하여 7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5. 5. 20. 변제기를 2016. 5. 20.로 변경하였다.

3)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 A의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는 2015. 8. 14.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8.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발생통지를 받고, 2015. 9. 30.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다.
- 2)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82,777,930원(=원금 677,820,720원+이자 4,957,2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6,839,550원을 지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니케(이하 '피고 한국니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3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3) 피고 A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3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피고 B, 피고 한국니케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617,480원(=대위변제금682,777,930원+채권보전비용 등 6,839,5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82,777,9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1.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A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A가

피고 한국니케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 C, D와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피고 A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발생 약 3개월 전인 2015. 5. 7., 2015. 6. 30.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2015. 10. 6.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합계 689,617,48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적극,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등	재산가액(원)
1	김해시 E 공장용지 2478.6㎡	1,536,732,000
2	F 외 1필지 지상 예치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3층 공장 등	1,173,858,000
3	이 사건 1 부동산	3,464,746,000
4	이 사건 2 부동산	1,491,117,600
5	이 사건 3 부동산	182,070,000
6	기계기구	687,986,000
합계		8,536,509,600

나)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신한은행	7,000,000,000
2	기술신용보증기금	3,000,000,000
3	G 등	545,468,014
4	중소기업은행	700,000,000
5	중소기업진흥공단	207,245,171
합계		11,452,713,185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는 위 각 부동산 등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신용보증사고직전 피고한국니케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데 비추어 피고 A의 사해의사도추인할 수 있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한국니케, C,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한국니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한국니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2. 26. 위 적극재산 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각 부동산 등의 가액이 위 적극재산 표 기재와 같은 사실, 2015. 6. 30. 기준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면 $4,213,142,945\text{원}(=7,000,000,000\text{원} \times (3,464,746,000\text{원} + 1,491,117,600\text{원} + 182,070,000\text{원}) / 8,536,500\text{원 미만 버림})$ 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5,137,933,600\text{원}(=3,464,746,000\text{원} + 1,491,117,600\text{원} + 182,070,000\text{원})$ 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 A와 피고 한국니케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A와 피고 C, D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피고 한국니케는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조윤정, 판사 윤재필